

충청북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
일괄 정비 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수석전문위원 남범우

충청북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괄 정비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22년 1월 10일
- 회부일자 : 2022년 1월 11일

3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개정('21.12.15.공포, '22.1.13.시행)에 따라 인용 조문 등 단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단순 인용조문 변경
 -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 조례(시행령 94조 → 95조)
 -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(시행령 76조 → 74조)
 -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(시행령 78조 → 76조)

5. 검토의견

- 이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

조문 단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고자 제출되었음.

○ 관련 조례 개정내용은,

-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1조 중 “같은 법 시행령 제94조” 를 “같은 법 시행령 제95조” 로 개정하고,
-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5조제1항 중 “같은 법 시행령 제76조” 를 “같은 법 시행령 제74조” 로 개정하며,
-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제1조 중 “같은 법 시행령 제78조” 를 “같은 법 시행령 제76조” 로 개정하는 것임.

○ 이번 일괄 정비 조례안은 단순한 조문 변경의 사항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입법방식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도민의 자치법규 서비스 접근성과 이해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붙임: 충청북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괄 정비 조례안. 1부. 끝.